



보도시점 2024. 4. 4.(목) 11:00  
4. 5.(금) 조간

배포 2024. 4. 4.(목) 09:00

## 전략작물직불금 100% 받는 전략!

- 전략작물신청 농지 이행점검 실시, 감액 피하려면 준수사항을 지켜주세요! -

- (점검기간) 2024. 4. 15. ~ 5. 31. (약 2개월간)
- (점검대상) 전략작물직불(동계) 신청 등록 농지
  - \* 전략작물이란 밀, 콩, 가루쌀, 조사료 등 수입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함
- (점검내용) 논 활용, 전략작물 파종 및 수확,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
- (농업인 유의사항) 폐경, 휴경 등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감액 처분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박성우, 이하 농관원)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,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하였다.

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,000㎡ 이상의 농지에서, ②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,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.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%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.

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.4천ha(7.8%)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, 비대상농지, 비대상작물, 폐경,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.

특히 임야, 과수원, 고정식시설(비닐하우스 등)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·양파 등 비대상작물,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.

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.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(<http://www.naqs.go.kr>)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박성우 농관원장은 “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모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서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% 받기를 바란다.”라면서, “앞으로도 농업인의 올바른 신청 및 농지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### 붙임 2024 전략작물직불제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	책임자	과 장	전익성 (054-429-7800)
		담당자	사무관	주 영 (054-429-7807)



#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!

단가 인상 및 품목 확대



## 지급대상

농지(논)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면적 제외)에서 해당 기간(전년 11월 ~ 당해 연도 10월까지) 동안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

## 01 지급대상 농지



- ☑ 농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
- ☑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(畓)
  - 종전의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
  - \*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
  -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
  - 하계조사료의 경우 ①'23년에 정상적으로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, ②'18~'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, ③'21~'23년 기간 중 지자체 쌀 생산 자율감축협약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, ④'23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 등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## 02 지급대상 농업인



- ☑ (농업경영체 등록)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☑ (1천㎡ 이상 경작) 폐경, 휴경, 고정시설면적을 제외하고, 지급대상 농지(논)에서 1천㎡ 이상 대상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
  - \* 녹비용으로 재배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
  - \*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고

## 03 대상 품목



- 동계** 6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·사료작물
  - (식량작물) 걸보리, 쌀보리, 맥주보리, 밀, 호밀, 감자 등
  - (사료작물)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[별표 1]에 따른 목초, 풋배기 사료작물
- 하계** 10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두류, 가루쌀, 옥수수, 조사료
  - (식량작물) 콩·팥·녹두·완두·강낭콩·동부·잠두·칼콩·제비콩·병아리콩·렌틸콩 등 두류, 옥수수, 가루쌀\*
  - \*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(채종단지, 시범단지 등 포함)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
  - (사료작물)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[별표 1]의 곡물, 목초 및 풋배기 사료작물
  - \* 하계조사료는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

대상 품목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 
\* 인센티브 대상: 동계 밀·조사료 - 하계 두류·가루쌀

## 04 직불금 지급 기준



- ☑ 지급 금액: 지급단가(원/㎡) × 대상품목 재배 면적(㎡)
  - \*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 합산
- ☑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
  - 농업인: 30ha / 농업법인: 50ha /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: 400ha
  - \*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 농업인 지급 상한은 30ha

## 05 지급 단가



〈 전략작물직불 재배유형별 지급단가 〉

구분	품목	단가(ha당)	
단작	동계	밀	50만원
	하계	청에보리,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등 동계조사료	※
		보리,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	※
		두류	200만원
		가루쌀	※
이모작	동계 옥수수	100만원	
	하계조사료	430만원	
이모작	동계+하계 (동계) 밀·조사료 + (하계) 두류·가루쌀	350만원	

## 06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 벌칙



- 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자 (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43조)
  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- 직불금 지급을 제외(환수) 및 3년 간 등록 제한
  - 부정수급자 정보 공개
- ☑ 주의 사례
  - 직불금 대상 품목을 재배하지 않으나, 직불금을 신청하는 행위
  - 지급대상 농지가 아님(폐경, 휴경 등)에도 직불금을 신청하는 행위
  -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는 행위